

서울지부

Tel. 02-560-2553
02-560-2554
02-560-2578
Fax. 02-560-2840
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
언주로 508 상록회관 6층

경인지부

Tel. 02-560-2255
02-560-2587
02-560-2928
Fax. 02-560-2600
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
언주로 508 상록회관 6층

부산지부

Tel. 051-630-6815
051-630-6845
051-630-6819
Fax. 051-630-6878
48745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
23(범일동) KT범일타워 6층

대전지부

Tel. 042-600-0532
042-600-0533
042-600-0534
042-600-0560
Fax. 042-600-0501
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8
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

세종지부

Tel. 044-410-1304
Fax. 044-410-1320
30103 세종특별자치시
한누리대로 492(어진동)
청암빌딩 7층

광주지부

Tel. 062-350-5061
062-350-5062
Fax. 062-350-5090
61932 광주광역시 서구
죽봉대로52(농성동)
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

대구지부

Tel. 053-715-5434
053-715-5435
Fax. 053-715-5404
41950 대구광역시 중구
대봉로 260(오피스텔)
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

강원지부

Tel. 033-854-4710
033-854-4716
Fax. 033-854-4717
24436 강원도 춘천시
경춘로 2370(은의동)
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

전북지부

Tel. 063-281-7702
063-281-7703
Fax. 063-281-7720
54969 전라북도 전주시
완산구 흥산로 276,
전주상공 회의소 3층

제주지부

Tel. 064-802-1606
Fax. 064-802-1650
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서호중앙로 63(서호동) 1층

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

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

장애자녀편



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상담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**1588-4321**

퇴직유족연금은?

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
19세 이상 장애자녀가 유족이 될 수 있나요?

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인 상태로 퇴직연금수급자의 부양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.
(‘21.6.23.이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)



* '21.6.22.이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*

만 19세 이상인 장애자녀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 1~7급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으로 인정

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



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·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

퇴직연금·조기퇴직연금액 × 60/100

* 유족이 퇴직연금(공무원, 군인, 사학, 별정우체국 등)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/2 지급



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

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× 1/4 × (36개월 - 퇴직연금·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) × 1/36



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

연계퇴직연금 × 60/100

* 유족이 퇴직연금(공무원, 군인, 사학, 별정우체국 등) 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/2 지급



유족의 범위

구분	내용
배우자	<p>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'96. 1. 1.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'95.12.31.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「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」에 따라 인정
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19세 미만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「친생자관계 존재확인 판결」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된 경우 • 만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인 자(’21.6.23.이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퇴직연금수급자 사망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• 만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애등급 제1급~제7급*인 자(’21.6.22.이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
손자녀	<p>부(손자녀의 부)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이면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19세 미만인 자 • 만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퇴직연금수급자 사망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※ '21.6.22.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애등급1~7급인 경우에 한함.
부모	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
조부모	<p>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

※ 장애등급에 대한 세부내용은 「공무원재해보상법」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영 별표3과 별표4 참고

퇴직유족연금 시효

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**사망일로부터 5년**

※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,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

퇴직유족연금 제출서류

공통

-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
(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)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

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

- 배우자 :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
- 19세 미만의 자녀 : 자녀의 기본증명서
- 조부모 : 부의 가족관계증명서
- 손자녀 : 자의 가족관계증명서
- 양부모, 양자 : 입양관계증명서

유족 대표자 선정서

-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제출
-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

19세 이상의 장애자녀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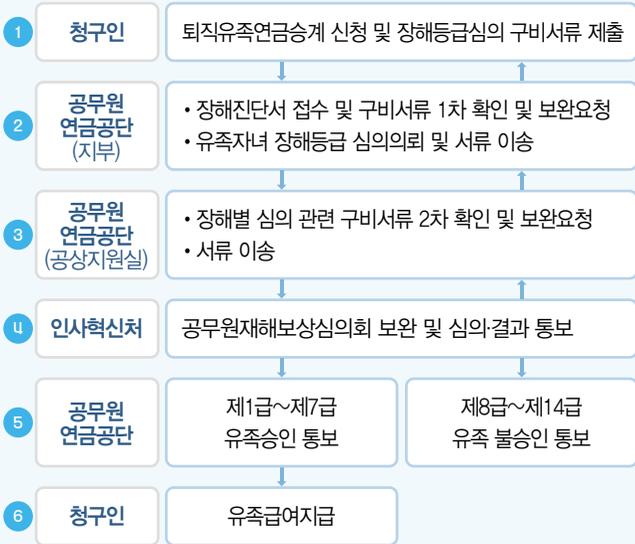
- 장애인증명서

※ 19세 이상 장애자녀, 손자녀,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

장애자녀 부양사실 인정기준

1	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	인정
2	<p>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 • 취학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, 부양으로 인정하는 경우 	인정
3	<p>사실상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판단시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점임. 	인정

퇴직연금 수급자가 2021. 6. 22. 이전 사망한 경우 해당 장해등급 심의 절차



※ 장해자녀의 유족여부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(퇴직연금수급자 사망) 이후에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해등급심의 신청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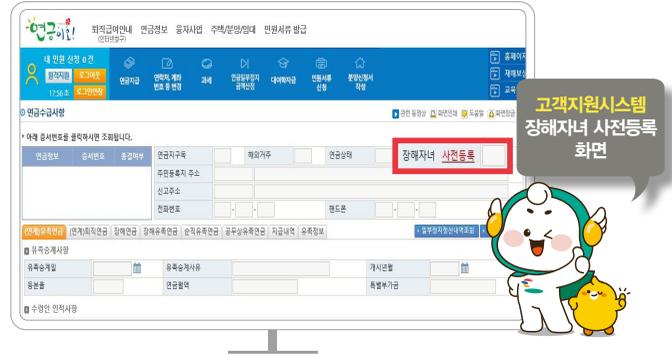
장해등급 심의절차에 필요한 서류

내용	비고
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(공단서식) •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 소견서(해당자에 한함) •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(해당자에 한함) • 영상물 CD(MRI, CT, X-ray 등)	장해 확정일자 반드시 기재
• 영상CD(판독지 포함) - 무릎 및 어깨 등 : MRI(없을 시 CT), 관절내시경 사진 - 척추 및 뇌질환 : MRI(없을 시 CT) • 심장 및 신장 : 심장초음파검사결과지, 신장기능검사결과지 • 치과질환 : 파노라마 사진, 결과기록지(항후 진료소견 포함) • 눈 : 시신경검사결과지, 망막검사결과지 (교정시력, 나안시력 모두기재) • 이명 : 순음청력검사, 이음향 방사검사, 이명도검사 결과지 • 난청 : 순음청력검사, 언어청력검사, 임피던스 청력검사,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• 정신과 : 심리검사결과지, 정신과치료내역(의무기록지 등)	장해 유형별 제출서류 상이

※ 유족급여신청 관련 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(www.geps.or.kr) ▶ 민원 상담 ▶ 각종 서식 ▶ 연금수급자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장해자녀 수급권리 보호

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한 후 장해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모르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본인의 수급권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**고객지원시스템의 「장해자녀 사전등록」**을 할 수 있습니다. 장해자녀 사전등록을 하시면 유족연금수급권 발생시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



행정구제제도

심사청구 [공무원연금법 제87조]

요건 급여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

처리절차 청구인이 공단에 **직접 청구**
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(국무총리 소속)의 심의를 거쳐 결정

구비서류 심사청구서(서식), 심사청구이유서, 답변서 등

청구시효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**180일**,
그 사실을 안 날부터 **90일 이내**

행정소송

처리절차 법원에 소장 제출(심사청구 생략하고 행정소송제기 가능)

시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**90일**,
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**1년 이내**에 제기